공 개

의안번호	제 152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5. 20. (제 10 차)

의결사항

아너스자산운용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권 대 영
제출 연월일	2026. 5. 20.

1. 의결주문

아너스자산운용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2. 제안이유

아너스자산운용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'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' 행위가 적발되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가.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

○ 아너스자산운용㈜ : 과태료 40백만원 부과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 붙임 >

다. 관계부서 협의

○ 2026년도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(2026.3.19.) 심의필

<별지>

아너스자산운용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아너스자산운용㈜ : 과태료 40백만원 부과*

*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

- 조치사유 :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

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제8호, 제449조 제1항 제29호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 제4항 제5호, 제390조 및 <별표22>

2. 조치사유

가.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

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아너스자산운용㈜는 투자자인 A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'2x.xx.xx. ㈜펀드를 설정하고, 재산 전액(O억원)으로 B가 발행한 O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㈜펀드의 유일한 운용자산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
< 붙임 >

관계 법규
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
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1. ~ 7. <생략>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제44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28. <생략>
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② ~ ④ <생략>
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 ~ ③ <생략>

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~ 4. <생략>
5.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
6. ~ 9. <생략>

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[별표 22]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390조 관련)
1.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

수 있음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터. 법 제71조(제7호에 한정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정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정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정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29호	5,000만원

□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② <생략>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, <별표3>과태료 부과기준 및 <별표6>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0조 관련)

위반결과* \ 동기**	상	중	하
중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* 중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

보통 : '중대', '경미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경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

**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
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
하 : '상' 또는 '중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산운용과	금융투자검사3국
연 락 처	02-2100-2673	02-3145-7839